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

“특별공급 신청은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합니다.”

## ●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 체크리스트

### 1 인터넷 청약 신청 필수

-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한국 부동산원 청약Home에서 인터넷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 2 청약통장 가입요건 충족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 이상 충족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소유자의 경우 청약통장 필요없음)

### 3 공동인증서 발급 필수

- 청약접수일 이전에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내용																		
배정세대수	A-4블록 122세대 / A-9 블록 65세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 10% 범위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 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외.</li> <li>추천기관</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장애인</th> <th>국가유공자 등</th> <th>북한이탈주민</th> <th>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th> <th>장기복무 제대 군인</th> <th>중소기업 근로자</th> </tr> </thead> <tbody> <tr> <td>경기도청, 서울시청,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td> <td>경기남부보훈지청</td> <td>통일부 하나원</td> <td>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td> <td>경기남부보훈지청</td> <td>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td> </tr> <tr> <td colspan="3">청약통장 필요 없음</td> <td colspan="3">청약통장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td> </tr> </tbody> </table>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	장기복무 제대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경기도청, 서울시청,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경기남부보훈지청	통일부 하나원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경기남부보훈지청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청약통장 필요 없음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	장기복무 제대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경기도청, 서울시청,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경기남부보훈지청	통일부 하나원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경기남부보훈지청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청약통장 필요 없음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li> <li>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li> <li>「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li> <li>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함.[특별공급 신청일에 미 신청시 입주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기]</li> <li>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자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자를 포함하여 무작위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li> <li>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재당첨제한사항도 없어야 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li> </ul>																		